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31

발의연월일: 2021. 7. 21.

발 의 자 : 민형배·김민철·김수흥

김철민・이규민・이수진(॥)

이정문 · 정필모 · 홍성국

홍정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25 등의 기간 중 전사·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녀 1명에게만 6·25전몰 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권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21. 3. 25. 선고, 2018헌가6 결정).

이에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 당을 우선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 하게 지급하려 합니다.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합리성과 형평성 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3제1항 등).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를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
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당) 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	
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	
경의 <u>자녀 중 제13조에 따른</u>	<u>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u>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년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u> 따라 지급한다</u>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	
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	
지 아니한다.	
<u><신 설></u>	1.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u>자녀</u>
<u><신 설></u>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
	는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u><신 설></u>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하

	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